

증오 및 차별 조장을 막기 위한 제안: 요약서



목차

여섯 가지 제안	3
선동적인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4
선동적인 발언은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5
현행법	5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6
법에서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6
와이탕이 조약 고려사항	7
제안에 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한 질문	7
혐오 표현이나 행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9
추가 정보	9

법무부(Te Tāhū o Te Ture)는 증오 및 차별 조장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제안에 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습니다.

1993 인권법은 인종 간의 불화를 선동(유발)하는 발언을 금지합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 특징에 근거한 차별도 금지합니다.

법무부의 검토와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 진상 규명' 결과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부는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 조항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제 변화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다양한 면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우리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를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증오 조장 발언과 차별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 개선은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가 수호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권리장전(1990)에,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법률 개정안의 목표는 이 두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권리장전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제한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여섯 가지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즉, 정부는 제안된 변경사항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법률 개정 여부와 방식에 관한 최종 결정에 앞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제안은 여러분께서 주시는 피드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 선동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 확대
-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결과 강화
- 더 넓은 범위의 차별에 대한 보호 강화

현행법, 제안된 변경사항 및 제안 이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증오 및 차별 조장을 막기 위한 제안](http://www.justice.govt.nz/proposals-against-incitement-of-hatred-and-discrimination)(www.justice.govt.nz/proposals-against-incitement-of-hatred-and-discrimina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제안된 변경사항을 그대로 적용할지,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의견 수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의견은 시민공간 웹사이트(<https://consultations.justice.govt.nz>), 이메일(humanrights@justice.govt.nz), 우편(Human Rights, Ministry of Justice, SX10088, Wellington)을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및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웹사이트(www.justice.govt.nz/proposals-against-incitement-of-hatred-and-discrimination)에서 토론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 제안

<p>제1 제안: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더 많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3 인권법의 선동 관련 조항의 표현을 변경한다.</p>	<p>현행 선동 관련 조항은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발언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장애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의 표적이 되는 집단도 있습니다. 제1 제안은 더 광범위한 특징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경우에도 선동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인권법 21조(토론 문서 부록 1 참조)에 명시된 다른 차별 금지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떤 집단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견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17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p>
<p>제2 제안: 기존의 1993 인권법 규정을 더욱 분명하고 효과적인 1961 범죄법의 새로운 범죄행위 조항으로 교체한다.</p>	<p>이는 보호 대상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조장, 선동, 유지 또는 일반화하는 사람이 폭력 조장을 포함하여 위협, 학대, 모욕을 이용하는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두, 서면, 온라인 등 위협 또는 학대 방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적용될 것입니다. 보호해야 하는 집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 제안을 참조하십시오.</p>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18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3 제안: 심각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최대 3개월 구속 또는 최대 \$7,000 벌금입니다. 제3 제안에서는 최대 3년 구속 또는 최대 \$50,000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19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4 제안: 형사 규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선동 관련 민사 규정의 표현을 변경한다.	민법 61조의 기존 문구에 '혐오 조장/선동, 유지 또는 일반화'가 추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개선할 다른 방법에 대한 피드백도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21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5 제안: '차별 조장'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되도록 민사 규정을 변경한다.	혐오 선동 관련 규정으로 보호되는 집단(제1 제안 참조)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법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22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6 제안: 성전환자, 성다양성자, 간성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권법에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한다.	현행법에서 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납니다. 정부는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징 또는 간성 신분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6 제안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더 분명하게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문서 23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동적인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법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민족성, 종교 또는 성적 취향 등의 공통된 특성에 기초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섯 가지 제안은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과 구체적으로 관련됩니다. '증오를 선동/조장'하는 발언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 특징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 아닌) 해당 집단을 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또는 위협적 발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동 발언', '증오 선동/조장', '선동 관련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제안은 다른 형태의 증오 범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제안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관련 활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토론 문서 2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동적인 발언은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증오의 표적이 되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동적인 증오는 적대감 유발, 사회 통합 저해를 통해 우리 사회를 해칩니다.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모든 공동체 사이에서 불신과 분열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증오 선동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개선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안전해지고 증오 선동이 해로운 행동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증오 선동은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은 우리의 국제인권 의무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법

1993 인권법에는 형사 규정과 민사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체계는 개인, 조직, 그리고 일부의 경우 지방정부나 중앙 정부 사이의 사적 분쟁을 다룹니다. 형법 체계는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더 심각하고 유해한 행위를 파악하고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민사 규정(제61조)은 다음 2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용어를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사용, 출판, 방송 또는 배포하는 행위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협적, 학대적 또는 모욕적임, 그리고
2.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을 토대로 어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거나 멸시할 가능성이 있음

누군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규정(제131조)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용어를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출판, 방송 또는 배포하여 인종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형사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협적, 학대적 또는 모욕적임
2. 피부색, 인종, 민족성 또는 국적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악의를 자극하거나 경멸 또는 조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3. 그러한 적대감이나 악의, 경멸 또는 조롱을 촉발하는 것을 의도함

이러한 위법 행위는 최대 3개월의 구속이나 벌금 \$7,000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초석이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장전에 명시한 다른 모든 권리 및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권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선동 관련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한계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한계 규정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식으로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구성합니다. 선동 관련 조항은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권 및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조장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민족성, 종교 또는 성적 취향 등의) 공통 특성으로 인해 일부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그러한 집단은 같은 권리를 가져서는 안되며 다르게 대우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제안은 범죄적 발언의 높은 임계치를 낮추지 않으며 중요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률 개정 제안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 법무부는 현행법을 검토하였고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 역시 '2019년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 진상 규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파악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현행 형사 규정과 민사 규정의 문구가 불분명합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형사 규정의 문구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현행법 규정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 규정은 인종, 국적, 민족성, 피부색만을 다룹니다. 인권법 제 21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 13개 중 4개만 있습니다.
3. 형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의도적인 증오 선동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섯 가지 제안에 관해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와이탕이 조약 고려사항

와이탕이 조약(Te Tiriti o Waitangi)은 인권법 및 정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한 제안의 선동 관련 조항 및 차별 금지 대책과 관련됩니다. 마오리족은 혐오 표현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며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이라는 근거에 따라 선동 관련 조항에서 현재 다루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서는 마오리족을 포함한 민족 집단을 증오 선동 발언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른 차별 금지 사유가 마오리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카타푸이(Takatāpui,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을 가지는 마오리족)가 이와 관련될 것입니다.

제안에 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한 질문

토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모든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과 제안별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모든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어떤 것입니까?
- 정부 제안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 정부 제안은 와이탕이 조약과 관련하여 본 문서에서 언급했던 것 이외에 다른 문제를 제시합니까?

제1 제안에 관한 질문:

- 선동 관련 조항을 이런 식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집단을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떤 집단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경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 제안에 관한 질문:

- 형사 규정의 문구를 제2 제안에 따라 변경하면 의미가 더분명해지고 간단해져서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2 제안을 통해 새로운 범죄 조항에 의거하여 불법이 될 행동 유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 제안에 관한 질문:

- 제3 제안에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제4 제안에 관한 질문:

- (민사 규정) 제61조의 어휘를 변경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민사 규정의 문구 중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제5 제안에 관한 질문:

- 제61조에 차별 선동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 동의하는 이유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6 제안에 관한 질문:

- 제6제안에서 도입하려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법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집단을 제6 제안을 통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카타푸이(Takatāpui)와 같은 문화적인 성 정체성을 제6 제안을 통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혐오 표현이나 행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전이 위험해졌다고 느껴질 때는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응급상황이면 111로 전화하시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105로 전화하십시오.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도움에 관한 정보는 <https://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how-make-compla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종 차별 관련 정보는

<https://www.hrc.co.nz/enquiries-and-complaints/faqs/racially-offensive-comments/>를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https://www.netsafe.org.nz/>를 확인하십시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1737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추가 정보

토론 문서 전문:

www.justice.govt.nz/proposals-against-incitement-of-hatred-and-discrimination

법무부(Te Tāhū o Te Ture) 웹사이트:

www.justice.govt.nz/proposals-against-incitement-of-hatred-and-discrimination

